



## 산업보건 주요뉴스



###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9월 25일 (금)에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보호위, 9.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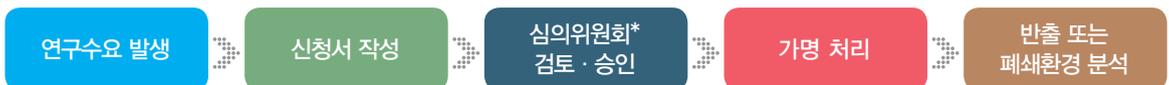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 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고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 해당 기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처리 및 활용 절차 개요 〉



\* (심의위원회) 기관 내 · 외부의 가명정보 활용 및 제공 여부, 가명처리 적정성 등 심의



##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

2016~2018년 건설업 중대재해 유형별 현황 분석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추락 사망사고가 가장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최근 3년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건설업	464	458	390	1,312

업종별로 건설업 1,312명(51.0%), 제조업 673명(26.1%), 서비스업 등의 기타업종 590명(22.9%)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주요 발생형태는 ‘떨어짐’ 사고로, 연도에 관계없이 전체 발생형태의 약 60%를 차지했다.

공사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약 60%(789명)로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았으며, 공사금액별로는 ‘20억 미만 공사’가 약 70%(892명)를 차지했다.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약 30%(404건)가 ‘방호장치 미설치 또는 불량’으로 파악됐으며, 약 17%(232건)는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는 등 ‘작업수행절차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설치된 방호장치는 작업발판(13.7%), 안전난간(11.7%), 추락방지망(10.1%)순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분석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이 데이터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근 3년의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 2,999건 중 요양 및 일반재해 등을 제외하고 분석 가능한 보고서의 업무상 사고사망자 2,57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사망재해 등 중대재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하는 보고서

\*\*산안법상 중대재해 범위(시행규칙 제3조):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당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배포한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 산업보건 주요뉴스



###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1년 → 3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 확대 및 소위원회 활성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범위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기회 확대’,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0.10.6.~11.15.)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필요성이 높은 특고 산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산재근로자가 보다 쉽고,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전문가, 주요 노동단체 등 이해 당사자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

특고 특례적용 제도 도입('08.7.) 이래 적용 직종을 지속 확대하여 현재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를 분야별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정보기술(IT) 분야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약 6만6천명)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하며,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현재 산재근로자가 장애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장애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3년 이내 신청 시 최저임금 50%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만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직업훈련 중단 반복 등을 고려하여 산재근로자가 장애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에도 최저임금 상당액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 ■ 업무상 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현재 특별진료기관의 진찰(이하 ‘특별진찰’) 또는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온 사건,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사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결정을 도모한다.

※ 해당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보도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